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8 - 23 호

「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20일

강릉시 의회 의장

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아이스 아레나의 이관에 따른 현실적인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연, 문화행사, 체육경기 등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용자가 관람권 및 초대권을 발급하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기존 1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조정 (안 제12조 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33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용자가 관람권(초대권을 포함한다)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6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.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이용 및 감면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체육시설 등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) ① 사용자가 관람권(초대권을 포함한다)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.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2조(체육시설 등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) ① 사용자가 관람권(초대권을 포함한다)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6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. 그 금액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